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54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최은석 · 이종배 · 안철수
구자근 · 강대식 · 신성범
김상훈 · 한지아 · 김성원
김장겸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때에는 常任委員”을 “때에는 상임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
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업무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선출 또는 지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은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5條(委員長) ① ~ ④ (생략)</p> <p>⑤ <u>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u></p>	<p>第5條(委員長)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때에는 상임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u>-----</p> <p>-----</p> <p>-----</p> <p>-----</p> <p>-----</p> <p>-----</p> <p>-----</p>
<p>第6條(常任委員) ① <u>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u></p> <p>② <u>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u></p> <p><신 설></p>	<p>第6條(常任委員) ①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u></p> <p><삭 제></p> <p>③ <u>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u></p>

③ (생략)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各級選舉
管理委員會委員중 常任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3. (생략)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게 하기 위하여 1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

-----.

<삭제>

2.·3. (현행과 같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